

# 대구FKTU인적자원전문학교 공고 2024- 호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대구 자동차부품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구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의 노후화 및 고위험 작업장의 후생시설 환경개선지원을 통해 자동차 완성차와 협력사 간의 성공적인 상생 체계를 마련하고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2024년도 「대구 자동차부품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구지역 소재 자동차 부품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28일

대구FKTU인적자원전문학교장

## 1. 사업목적

- 대구시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기업의 노후화·고위험 작업장 및 후생시설 환경개선지원으로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
- 산·학·연·관 고용 거버넌스 운영 및 실태조사 기반의 일자리 현안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 2. 사업개요

- 사업명 : 대구 자동차부품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
- 공사기간 : '24년 6월 ~ '24년 12월까지
- 지원규모 : 총 25社 정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작업장·후생시설 등 근로환경개선이 필요한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 (2차 이하) 협력기업 등

※자동차부품제조업(C30)+기타업종(협약기업 협력사 한정) \*제조업 500인 이하

※1, 2, 3차 협력사 납품증명서 및 세금계산서의 주요 매출처

- 지원내용 : 상기 지원대상 기업의 근로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지원  
 ※기업당 지원한도 1,500만원 이내 / 기업부담금 10% 이상, VAT 기업부담
- 수행기관 : 대구FKTU인적자원전문학교(이하 ‘학교’ 라 칭함)
  - (후생시설 환경개선 지원) :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화장실, 휴게실 등
  - (작업장 안전 환경개선 지원) : 작업장 안전 관련 시설, 작업공간 집진시설, 공조·배기시설, 냉난방기, 분진 제거기 등

※ 자산으로 등록되는 시설 및 장비, 단순 바닥 (에폭시) 공사 및 조명교체 등은 지원불가  
 ※ 환경개선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공사비용이 아닌 예산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장비구입 및 임차료, 소모품 구입 등) 지원불가

- 필수조건 : ‘24년 6월 12일 이후, 1명 이상 신규채용
  - ※1명 이상 채용약정 의무화 / 최종 평가 후 수혜 대상 기업에 지원
  - ※필수조건(신규채용 + 공사완료) 충족 시, 11월 이후 일괄 지급예정

지원금액	신규채용
1,500만 원 이내	1명 이상 고용 (정규직)
※ 신규 채용자 : 2024. 6. 12. 이후 입사자 (채용 예정 기업은 10월 말까지 채용 완료해야 하며, 미채용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정규직 채용 필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비상근축탁근로자,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은 제외 ※ 사업주 부담금액 : 지원금액(공급가액)의 10% 이상, VAT 부가가치세 자부담	

### 3. 추진일정 및 평가방법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청서 접수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심의를 거쳐 선정  
(다만, 필요 시 자체 심사를 통한 선정 가능)
- 평가절차 : 서면평가, 현장점검, 최종평가
- 선정방법 : 평가위원에서 서면평가로 기업의 신청서, 사업계획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1차로 선정하고, 현장점검 후 최종평가를 통하여 지원기업 최종선정
  - ※ 관련 구비서류는 공고 기간 내에 수행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우대조건
  - 대구 스타벤처기업, 대구 Pre-스타기업, 대구 스타기업100, 대구 지역스타기업, 대구 고용친화기업, 글로벌강소기업,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 수요조사를 통한 사내 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 관련 수요 반영 기업

#### 4. 신청방법

- 공고 및 신청기간
  - 1차 7. 1. (월) ~ 7. 31. (수) 접수 마감
  - 2차 8. 1. (수) ~ 8. 23. (금) 접수 마감
  - ※ 25社 모집완료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신청서교부 : 대구FKTU인적자원전문학교 홈페이지 (<http://www.hrdg.or.kr>)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신청서] 다운로드
  - ※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한 개의 스캔파일(PDF 문서) 형태로 e-mail을 통해서만 접수 (방문, 우편, 팩스 불가)
  -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제출 시 [붙임1. 제출서류 목록표] 순서대로 정리 필수
- 접수처

운영기관	주소 및 연락처
대구FKTU 인적자원전문학교	- 달서구 조암로 13, DTL빌딩 5층 - ☎ 053-475-9003 - email : job7183@naver.com

## 5.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 지원제외 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장, 부동산업 등 제외
- ②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무허가 건물, 불법 증축 및 개축 건물에 시공하는 경우
- ③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 ④ 건설공사현장 등 계절적,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 ⑤ 신청기업과 공사시공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  
(예 : 기업, 기업대표, 임원, 회사 가족 등이 공사업체 관계자인 경우)
- ⑥ 협약 체결 전 공사를 착공한 경우 또는 공사비 확보가 불가능한 기업
- ⑦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⑧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 ⑨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 ⑩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기업
- ⑪ 최근 2년 내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 ⑫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 유의사항

#### ■ 환경개선 장소는 대구지역만 가능

※ 본사는 대구시 소재, 공장(생산시설)은 타 지역인 경우, 본사 환경개선만 가능

#### ■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감독은 사업주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수행기관 (대구FKTU인적자원전문학교)에서 수시 및 불시 점검 가능

#### ☞ 공사업체 선정

- 대구지역 내 소재(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공사 관련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
-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이상인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공사 면허를 소지한 기업 선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 ※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실내건축업, 소방공사업, 전기공사업 등
- 민법상 사업주와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업체에 공사 위탁 시 지원 불가

#### ☞ 공사 관련 유의사항

- 공사기간 내 공사완료 가능한 기업
- 공사착공 전 수혜기업과 시공업체 간 공사계약서 제출
-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사업수행기관(학교)에서 공사 관련 보완사항을 기업에 통보할 경우 기업에서는 반드시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 진행

- E-mail 접수 선착순으로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사업비, 공사업체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이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업수행기관(대구FKTU인적자원전문학교)에 사전 문의 후 절차 진행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지원금 신청 : 공사가 완료되면 기업이 공사업체에게 공사비용을 선(先) 지급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수행기관(대구FKTU인적자원전문학교)에 사후 청구 (추진일정에 따라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협약기업에 개별 안내
- 지원조건 및 증빙서류에 이상이 없을 시 지원금 지급
- 선정기업이 신청서상 허위내용 기재 혹은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이 확인될 경우,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향후 사업참여 배제 대상임을 숙지

## 6. 문의처

- 담 당 자 : 대구FKTU인적자원전문학교 기업지원사업팀  
(☎ : 053-475-9003 / E-mail : job7183@naver.com)

## 7. 제출서류[붙임파일]

- 붙임 1. 제출서류 목록표
- 붙임 2. 작성서식 (신청서, 사업계획서, 협약서)
- 붙임 3. 설계도면 예시
- 붙임 4. 자동차부품 산업관련 분류코드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확인 및 작성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